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 하도록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은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사용함.(안 제3조)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 관리관에게 위탁함.(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5조)
-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6조)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7조)
-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함.(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개별 기금위원회가 그 기능이 서로 다른데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하면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5명으로 늘려 심의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 개별기금 심의기능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는데 보훈기금심의위원회에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유사한 위원회는 없는가?	○ 유사한 위원회가 없음. (사회복지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서로 다른 개별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3. 보훈 및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보훈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보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보훈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기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보훈기금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7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 하도록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사용함.(안 제3조)
- 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함.(안 제4조)
-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5조)

- 마.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6조)
- 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7조)
- 사.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함.(안 제8조)

□ **첨 부: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3. 보훈 및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보훈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보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보훈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기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보훈기금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현행 조례)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 2003. 01. 15 조례 제1910호

개정 2005. 11. 11 조례 제212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향상 및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

②기금은 2006년까지 총10억원을 조성하며,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보훈 복지향상등에 관한 사업
4.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보훈단체 대표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 감사1인을 두되 감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③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하되 지출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 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며, 제14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